

2023년 지방의료원 중앙교섭협약서

<1> 임금

1. 2023년도 지방의료원 임금은 2023년도 공무원 보수 규정을 적용하여 <별표 1>과 같이 변경하여 인상한다. 임금인상 적용시기는 '23년도에는 7. 1. 이내로, '24년에는 4. 1. 이내로, '25년도부터는 회계연도기준(1. 1.) 으로 적용한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강릉의료원, 영월의료원, 속초의료원, 삼척의료원의 임금인상과 지급시기는 별도 노사합의로 정한다. 군산의료원 소속 2022년 12월 31일자 재직자에 대해서는 공무원 임금인상율을 적용하되, 세부사항은 노사합의에 따른다.
3. (최저임금) 지방의료원의 최저임금은 지방자치단체별 생활임금을 준수하기로 노력한다.
4.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단체협약

1. (부서운영업무비) 부서운영업무비는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의료기관별로 시행한다. 다만, 미시행 중인 의료기관은 시행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2. (직급보조비) 직급보조비는 다음과 같이 인상하며, 2023. 8월부터 적용한다. 군산의료원 소속 2022년 12월 31일자 재직자는 2023년 지방의료원 중앙교섭 합의를 준용한다.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

구분	월지급액(변경전)	월지급액(변경후)
2급	500,000원	500,000원
3급	400,000원	400,000원
4급	250,000원	250,000원
5급, 약사	175,000원	185,000원
6급	165,000원	180,000원
7급, 8급	155,000원	175,000원

3. (가족수당)

- ① 가족수당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에게 지급한다.
다만, 군산의료원과 순천의료원은 별도 합의에 의한다.
- ② 가족수당은 다음과 같이 인상하며, 2023. 8월부터 적용한다.

<가족수당 지급구분표>

부양가족		월 지급액
배우자		40,000원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20,000원
자녀	첫째 자녀	30,000원
	둘째 자녀	70,000원
	셋째 이후 자녀 1명당	110,000원

- 4. (교대근무자보호) 야간 근무 후 근무 번이 변경될 때에는 최소 30시간 이상의 시차를 두며, 연속 야간 근무 후 2일이상의 시차를 두고 다음 근무를 편성하도록 노력한다.
- 5. (상급단체 파견자 처우개선) 상급단체 파견 종료 후 소속 의료원에 복귀 당해에는 파견직전의 연차휴가일수를 부여하고, 그 다음해는 파견연수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6. (장기재직 휴가)

- ① 장기근속자에 대한 포상지원으로 최초 입사일 기준 만 10년, 만 15년, 만 20년, 만 25년, 만 30년이상이 되는 해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일자가 도래하는 년도 1월에 다음과 같이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단, 발생한 장기재직 휴가는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을시 소멸한다.

구분	만 10년	만 15년	만 20년	만 25년	만 30년 이상
특별휴가 일수	2일	3일	3일	3일	5일

<별표 1>

지방의료원 2023년 기본급표

구분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약사
1	3,460,900	2,966,200	2,650,700	2,186,800	1,962,300	1,805,100	1,770,800	2,186,800
2	3,588,900	3,087,300	2,757,800	2,288,500	2,051,800	1,863,600	1,789,800	2,326,700
3	3,720,800	3,210,400	2,869,100	2,393,400	2,146,600	1,924,200	1,821,500	2,466,600
4	3,853,600	3,336,400	2,984,600	2,500,600	2,246,200	2,015,700	1,865,700	2,606,500
5	3,988,600	3,464,100	3,103,200	2,611,000	2,349,400	2,110,800	1,922,300	2,746,400
6	4,124,900	3,593,100	3,224,200	2,724,500	2,455,000	2,208,200	1,992,800	2,886,300
7	4,262,800	3,723,100	3,347,000	2,838,300	2,561,300	2,305,900	2,081,300	3,026,200
8	4,401,100	3,853,900	3,471,400	2,952,500	2,668,400	2,399,900	2,166,600	3,166,100
9	4,540,500	3,985,100	3,596,200	3,067,000	2,770,200	2,489,500	2,248,300	3,306,000
10	4,679,800	4,116,100	3,721,900	3,174,400	2,867,400	2,574,300	2,326,900	3,445,900
11	4,819,400	4,248,300	3,839,300	3,276,300	2,959,100	2,656,400	2,401,800	3,585,800
12	4,964,100	4,372,700	3,952,600	3,376,600	3,049,200	2,736,600	2,476,400	3,725,700
13	5,098,500	4,489,000	4,060,100	3,470,900	3,134,700	2,813,700	2,547,800	3,865,600
14	5,223,400	4,597,600	4,160,300	3,560,000	3,216,400	2,887,400	2,617,200	4,005,400
15	5,338,400	4,699,800	4,255,000	3,645,700	3,294,500	2,958,100	2,683,500	4,145,300
16	5,445,700	4,796,300	4,344,100	3,725,900	3,368,300	3,026,500	2,747,600	4,285,200
17	5,545,400	4,885,900	4,427,900	3,802,400	3,439,200	3,090,300	2,810,300	4,425,100
18	5,638,000	4,969,500	4,507,000	3,874,800	3,507,000	3,152,100	2,868,600	4,565,000
19	5,723,700	5,047,600	4,581,600	3,943,500	3,570,900	3,211,500	2,926,000	4,704,900
20	5,804,000	5,120,600	4,651,500	4,008,100	3,631,700	3,268,100	2,980,700	4,844,800
21	5,878,300	5,188,800	4,717,200	4,070,200	3,689,800	3,322,100	3,032,400	4,984,700
22	5,947,100	5,252,800	4,778,900	4,128,700	3,744,500	3,374,000	3,081,900	5,124,600
23	6,010,600	5,312,900	4,837,300	4,183,500	3,797,600	3,423,400	3,129,200	5,264,500
24	6,070,000	5,369,600	4,891,700	4,235,800	3,847,800	3,471,100	3,174,500	5,404,400
25	6,118,600	5,421,300	4,943,200	4,285,500	3,895,400	3,516,400	3,217,800	5,544,300
26	6,165,200	5,465,200	4,991,700	4,332,500	3,941,200	3,560,200	3,256,900	
27	6,208,300	5,505,600	5,032,000	4,377,100	3,979,700	3,596,800	3,290,500	
28		5,544,300	5,070,600	4,414,500	4,015,700	3,632,000	3,322,900	
29			5,106,100	4,449,500	4,050,500	3,665,400	3,354,200	
30			5,140,600	4,484,100	4,083,800	3,697,600	3,384,600	
31				4,516,100	4,115,000	3,728,900	3,414,500	
32				4,546,300				

② 제1항에 대해서는 2024. 1. 1.부터 적용한다.

7. (협약저하 금지) 이 협약서 체결을 이유로 기존에 합의되었던 노동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2023년 9월 13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지방의료원 중앙교섭 사용자 대표

위원장

나 순 자

경기도의료원장

김 일 응

인천광역시의료원장

김민서

순천의료원장

김민서